

[] 자료제출 요구서
[] 서면질의서

| 직무관련성 심사 신청인 | 성명 | 소속 | 직위 | 직급 등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|----|------|
| | 질의내용 (제출자료) | | | |
| 답변(자료제출) 기한 | 년 월 일 까지 | | | |
| 답변(자료제출) 기관 |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| | | |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14조의5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(서면질의)합니다.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14조의5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[[] 자료제출 요구]
[[] 서면질의] 합니다.

년 월 일

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

청인

○ ○ ○ 귀하

작성방법

<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'직급 등' 란 작성방법>

-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. 다만,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·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. [예: 고위공무원 가등급]
-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(외무공무원의 경우)을 적으십시오. [예: 서기관, 8등급]